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24. 1. 9.(화) 13:3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심의사항】

- |   |                                  |  |
|---|----------------------------------|--|
| 1 | 달성 삼가현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              |  |
| 2 | 성주 한개마을 주변 태양광 설치                |  |
| 3 | 상주 수암중택 주변 태양광 설치(재심의)           |  |
| 4 | 안동 하회마을 주변 자전거길 정비공사             |  |
| 5 | 경주 양동마을 주변 안계댐 들레길 조성 허가사항 변경허가  |  |
| 6 | 곡성 제호정 고택 주변 버스정차대 정비공사(재심의)     |  |
| 7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 【보고사항】

- |   |                 |  |
|---|-----------------|--|
| 8 |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
|---|-----------------|--|

# 심 의 사 항

## 1. 달성 삼가헌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

###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달성 삼가헌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달성 삼가헌 고택」 주변 태양광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270m)에 해당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달성 삼가헌 고택」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800 일원
- (3) 신청위치 :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859-4, 859-8
- (4) 신청내용 : 태양광 설치
  - 대지면적 : 1,921㎡

구분	가동	나동	다동	라동
건축면적	146.26㎡	183.75㎡	169.65㎡	198㎡
위치	묘리 859-4			묘리 859-8
설치면적	55.8㎡	83.7㎡	122.7㎡	200.8㎡
발전량	12kW	18kW	26.4kW	43.2kW
태양광 높이	1.04m (설치 후 7.16m)	1.54m (설치 후 7.7m)	1.63m (설치 후 8.13m)	1.4m (설치 후 12.43m)

## 2. 성주 한개마을 주변 태양광 설치

###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성주 한개마을」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성주 한개마을」 주변 태양광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3구역(이격거리 100m)에 해당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성주 한개마을」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문방공단길 48-18
- (4) 신청내용 : 태양광 설치
  - 대지면적 : 8,895㎡

구분	A동	B동	C동
건축면적	980㎡	675㎡	675㎡
설치면적	550㎡	512㎡	512㎡
발전량	122.4kW	114kW	114kW
태양광 높이	1m (설치 후 10.38m)	1.5m (설치 후 10.48m)	1.5m (설치 후 10.48m)

### 3. 상주 수암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재심의)

####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주변 태양광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3구역(이격거리 320m)에 해당함
  - ※ 제10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10.10.)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수암종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102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768-1
- (4) 신청내용 : 태양광 설치
  - 설치면적 : 942.47㎡
  - 발전용량 : 199.52kwp

구분	주1동	주2동	주3동
설치면적	350.69㎡	317.81㎡	273.97㎡
발전량	74.24kwp	67.28kwp	58kwp
태양광 높이	1.27m (설치 후 6.07m)	0.5m (설치 후 5.3m)	1.03m (설치 후 5.61m)
최초 신청높이 (‘23년 제10차 부결)	3.05m (설치 후 7.85m)	1.93m (설치 후 6.73m)	1.67m (설치 후 6.25m)

## 4. 안동 하회마을 주변 자전거길 정비공사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주변 자전거길 정비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주변 자전거길 정비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245m)에 해당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65-1 외 22필지
- (4) 신청내용 : 자전거길 정비공사
  - 사업면적 : 3,971㎡
  - 토 공 : 흙깎기(1,074㎡), 흙쌓기(100㎡), 터파기(320㎡), 되메우기(934㎡)
  - 배 수 공 : 배수관(D400, L=5m), 집수정(4개소)
  - 구조물공 : 다이크(H=0.2×L=222m), L형옹벽(L=419m), 가드레일(305m)
  -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B=3~3.2m×L=683m)



## 5. 경주 양동마을 주변 안계댐 둘레길 조성 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주변 안계댐 둘레길 조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주변 안계댐 둘레길 조성사업 허가사항 변경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200m)에 해당함
- ※ 제9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2.10.14.) : 조건부가결
  - 안내판 등의 형태 및 디자인 등이 양동마을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설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대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산27-3 일원(안계댐)
- (4) 변경내용 : 안계댐 둘레길 조성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기 허가사항	금번 변경 신청	비고
기존포장 활용	1,542m	1,633m	
흙길포장	741m	412m	
테크로드	763m	1,013m	
야자매트	225m	217m	
등의자/목교	14개/1개	12개/1개	
원주목계단	33단	20단	
안내판(종합/시설/방향)	2개/4개/6개	1개/4개/5개	
로프웬스	317m	117m	
자연석 쌓기	16m	-	

## 6. 곡성 제호정 고택 주변 버스정차대 정비공사(재심의)

### 가. 제안사항

전남 곡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 주변 버스정차대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 주변 버스정차대 정비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10m)에 해당함
- ※ 제12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3.12.12.)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
  - 소재지 : 전남 곡성군 입면 청계동로 908-4 (제월리)
- (3) 신청위치 :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6-1
- (4) 신청내용 : 버스정차대 정비공사

구분	부결('23.12.12)	금번 신청	비고
아스팔트 포장	163㎡(B=0.3~2.3m)	52㎡(B=0.3~3.18m)	
콘크리트 포장	12㎡(B=3m)	4㎡(B=0.8~3m)	
옹벽블록 설치	57m(H=1.8~2.8m) (콘크리트 옹벽)	30m(H=1.5~3m) (사석 또는 산석옹벽)	
가드레일 재설치	25m	30m	
버스정차대 설치	1개소	1개소	

##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규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합리적 조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보존정책과 주관 연구용역 실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 2021년 용역(인천, 경기, 부산 200건)
    - 2022년 용역(서울, 대전, 울산,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제주 378건)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
  -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옷골로 195-5 일원
- (2) 변경내용: 허용기준의 공통사항 **현행화 및 용어 표준화**
  - 문화재청 훈령 제652호(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4 [허용기준 공통사항] 반영**
  -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변경(별표1 반영)**
  - <별첨: 세부내용> 참조
  -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함

###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차, 2차) 결과에 따라 신청하게 된 사항임

<참고자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 1)

**【허용기준 고시 시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구 분	적용 대상 구역	비고
1구역	<p>개별검토 구역</p>	
	<p>-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형태) 및 행위(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특별한 구역</p>	
2구역	<p>고도제한 구역</p>	
	<p>-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최고 높이를 m 단위로 구분, 고도제한을 두는 구역                      ※ 하나의 문화재에 건축물 및 시설물 최고높이의 고도제한을 두는 구역이 총 4개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높이기준을 두는 지역부터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으로 구분</p>	
3구역	<p>타 법령에 따른 구역</p>	
	<p>-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p>	
4구역	<p>타 문화재 허용기준 적용 구역</p>	
	<p>- 다른 문화재(지방문화재 등)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된 구역으로, 고시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중복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역</p>	

<허용기준 작성 예시>

1. 개별검토 구역, 고도제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타 문화재 허용기준 적용구역이 모두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이하	○최고높이 7.5m이하
	2-2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2-3	○최고높이 11m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2-4	○최고높이 14m이하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시도기념물 ○○○○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2. 개별검토 구역이 없고 고도제한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만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2-1	○최고높이 5m이하	○최고높이 7.5m이하
	2-2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2-3	○최고높이 11m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2-4	○최고높이 14m이하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3. 타 법령에 따른 구역만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별표 4)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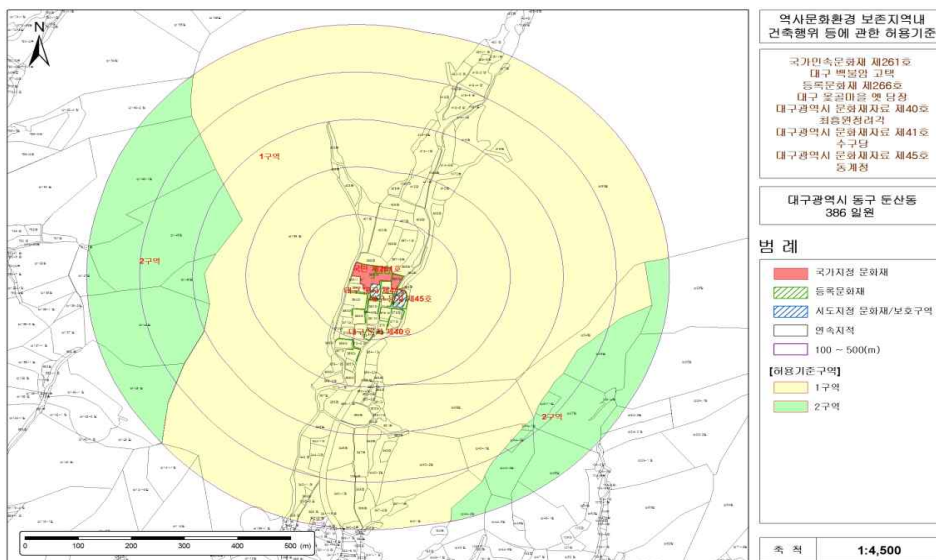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문화재유형	적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허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개별검토구역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기준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고도제한구역
경사지붕 기준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전체 유형	
용도범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 (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	
굴착규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절·성토 범위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문화재	
건축규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전체유형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도시계획 변경시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별첨: 세부내용>

1. 국가민속문화재 「대구 백불암 고택」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심의</li> </ul>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검토</li> </ul>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높이 5m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높이 7.5m 이하</li> </ul>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0.5m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검토함(1구역에 한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도면 변경 없음



# 보고 사항

## 8.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국가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계		1건	허가 1건
고창 신재효 고택	전북 고창군 (○○○)	<p>□ 고창 신재효 고택 주변 2023년 모양성 제야의 북소리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위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68-43(고창읍성 앞 사거리)</li> <li>○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70m (1구역)</li> <li>○ 사업내용: 모양성 제야의 북소리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간: 2023.12.31.(일)~2024.1.1.(월)</li> <li>- 행사방식: 길거리 버스킹공연식</li> <li>- 자바라텐트(12동,3m*6m), 탁자(12개, 1800*750),의자(50개), 음향설치(600*1400*600)</li> <li>- 달집모형 1기(높이 3m)/*달집태우기 없음</li> <li>- 텐트 내 전등 50개설치</li> </ul> </li> </ul>	<p>○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 시설물 설치 없이 소규모 간이 행사소품으로 구성됨</li> <li>- 제야 행사이므로 행사기간(1일)이 짧아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li> </ul>